

제198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2. 3. 25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2년 3월 7일

· 회부일자 : 2002년 3월 8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98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2. 3. 25) 상정, 질의답변, 수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한 철 환)

가. 제안 이유

- 최근 주택가,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
-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시장·군수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방법과 보호의무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시장·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
- 유기동물을 동물병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, 학술연구단체 등에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
- 도지사는 시장·군수에게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응희)

-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방법 및 그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
- 별표 (소요경비 산출 기준표)의 제2호의 소요 경비의 지급에 있어 위탁보호수수료를 관리인 및 포획인부 노임의 20%를 적용하

는 근거에 따른 상세한 설명과 유기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의 청구에 따른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6. 심 사 결 과 : “ 수정 가결 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9. 별 첨
 - ◎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 -충청북도지사제출
 - ◎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
 - ◎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수정안
 - ◎ 수정안대비표